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134
----------	--------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립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이 2022. 3. 31. 만료될 예정으로 재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속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운영의 위탁)
-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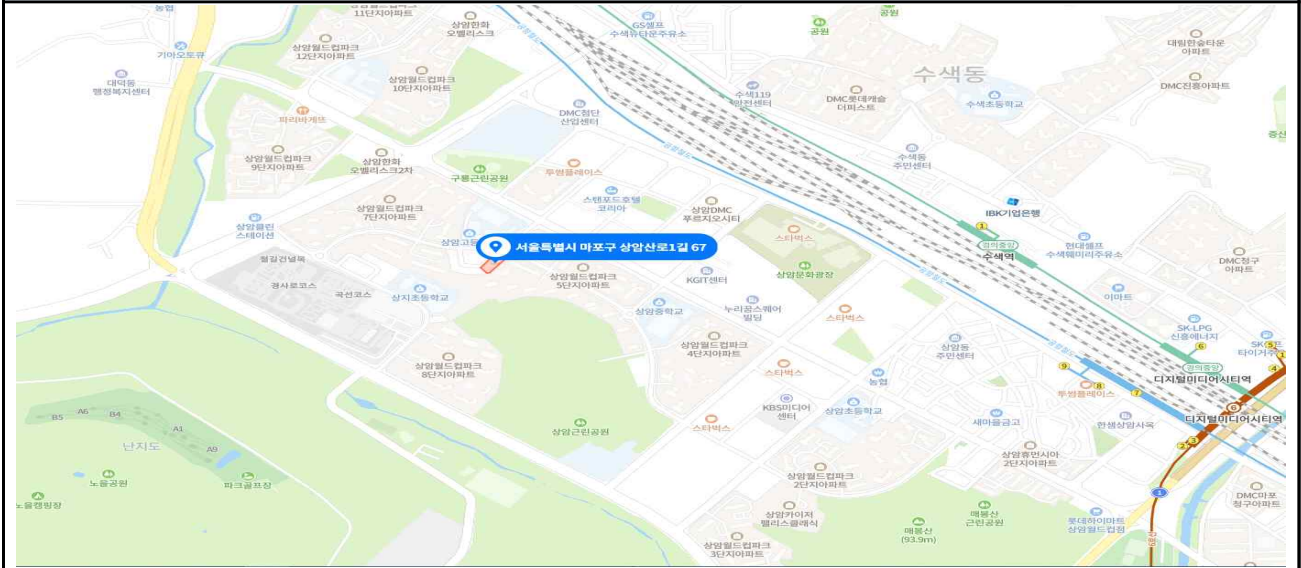
- 역량있는 단체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서비스 제공
-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의 참여활성화 기여
- 중심이 되는 구립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업의 안전성 영속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

위탁체	위탁기간	규모	수용인원	운영사업
(사)한국청소년 재단(관장:박선숙)	'19.4.1~'22.3.31	대지 1,463㎡, 연면적 3,687㎡ (지하1~지상5층)	500명	청소년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위치도 (소재지: 상암산로 1길 67)



마. 민간위탁기간 : 2022. 4. 1. ~ 2025. 3.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세부내역	산출근거
총사업비	3,665,000		
2022년	1,179,000	- 인건비 : 847,000 - 운영비 : 332,000	- 서울시 청소년시설 총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	1,221,000	- 인건비 : 889,000 - 운영비 : 332,000	
2024년	1,265,000	- 인건비 : 933,000 - 운영비 : 332,00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안 정적·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

3. 재위탁·재계약 관련 자료

가. 인적·물적 현황

- 인적현황 : 22명(관장 1, 부장 1, 팀장 4, 정규직 15, 계약직 1)
- 물적현황

구 분	취득원가(원)	감가상각누계액(원)	순액(원)
수탁자산	423,964,146	354,226,486	69,737,660

나.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보조금	집행액	잔액	비고
2019	1,044,000	1,044,000	-	
2020	1,097,000	1,097,000	-	
2021	1,129,000	1,129,000	-	

다.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 특이사항 없음

라.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구 분	조치사항	조치결과	비 고
2021년 지도점검	시정 6 / 주의 5	완료 4 / 기간미도래 2	

마. 사건·사고 현황

- 특이사항 없음

바. 성과평가결과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반영
- ※ '19년 : 최우수기관(92.4점) ' 21년 : 12월 예정

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2022. 1. 심의예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나. 기타사항

-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운영체 성과평가(여성가족부 종합평가) : 2021.12.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방침 수립 : 2021.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협약 : 2022.1.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